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관련 공청회

-문화재수리 관계자 대상 자료-

2017. 10

공청회 일정

공청회 개요 및 세부일정

- 일시 : 2017.10.27.(금) 14:00~16:00
- 장소 :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
- 주최 : 문화재청
- 주관 : 한국조달연구원
- 세부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3:00~13:30	30'	등 록	-
13:30~13:35	5'	인사말	-
13:35~14:15	40'	시범사업 모니터링 주요결과 보고 및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설명	한국조달연구원
14:15~15:25	70'	질의응답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한국조달연구원
15:25~15:30	5'	마무리 및 향후 일정 안내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장
15:30~16:00	30'	휴 식	-
16:00~16:55	5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안 설명	한국건축문화연구소
16:55~17:55	60'	질의응답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한국건축문화연구소
17:55~18:00	5'	마무리 및 향후 일정 안내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장

※ 본 자료에 제시된 개정안 내용은 '16년 9월 시범사업 시행을 기점으로 접수된 주요 개선 건의사항,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T/F회의에서 결정된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시범사업 모니터링 분석결과를 통해 제시된 개정안 마련을 위한 검토자료 이며, **최종 확정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실 때에는 적용 계약 기준에 따라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문화재청예규 제 180호, '17.7.5) 또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1호, '17.7.26)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Contents

PART 1 ■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개요

PART 2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시범사업

PART 3 ■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방법 및 분석

PART 4 ■ 개정안 검토

PART 1.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개요

001. 배경 및 필요성

002.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개요

003.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주요 내용

004. 주요 진행 경과

1.1 배경 및 필요성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통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역량 강화

문화재수리 공공조달 계약제도 전반의 문화재 적격성 향상

문화재 특성을 반영한 공공조달 계약제도를 기반으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 및 전문가가
문화재수리 품질을 보장하는 비용과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수행환경 구축

최저가 중심의 역량 평가 및
시설공사 관점의 낙찰제도 운용

- 송례문 복구공사와 관련 부실수리의 핵심원인으로 **최저가 중심의 문화재 수리역량 평가** 및 수리 대상 문화재의 역사성, 전문성, 학술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공사관점의 낙찰제도 운용**

“운찰제” 형태의
수리역량 평가 환경

- 실제 수리역량에 대한 평가 부문의 변별력 저하로 가격 중심의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 **수리능력과는 상관없는 수리업자가 선정되는 등 “운찰제” 논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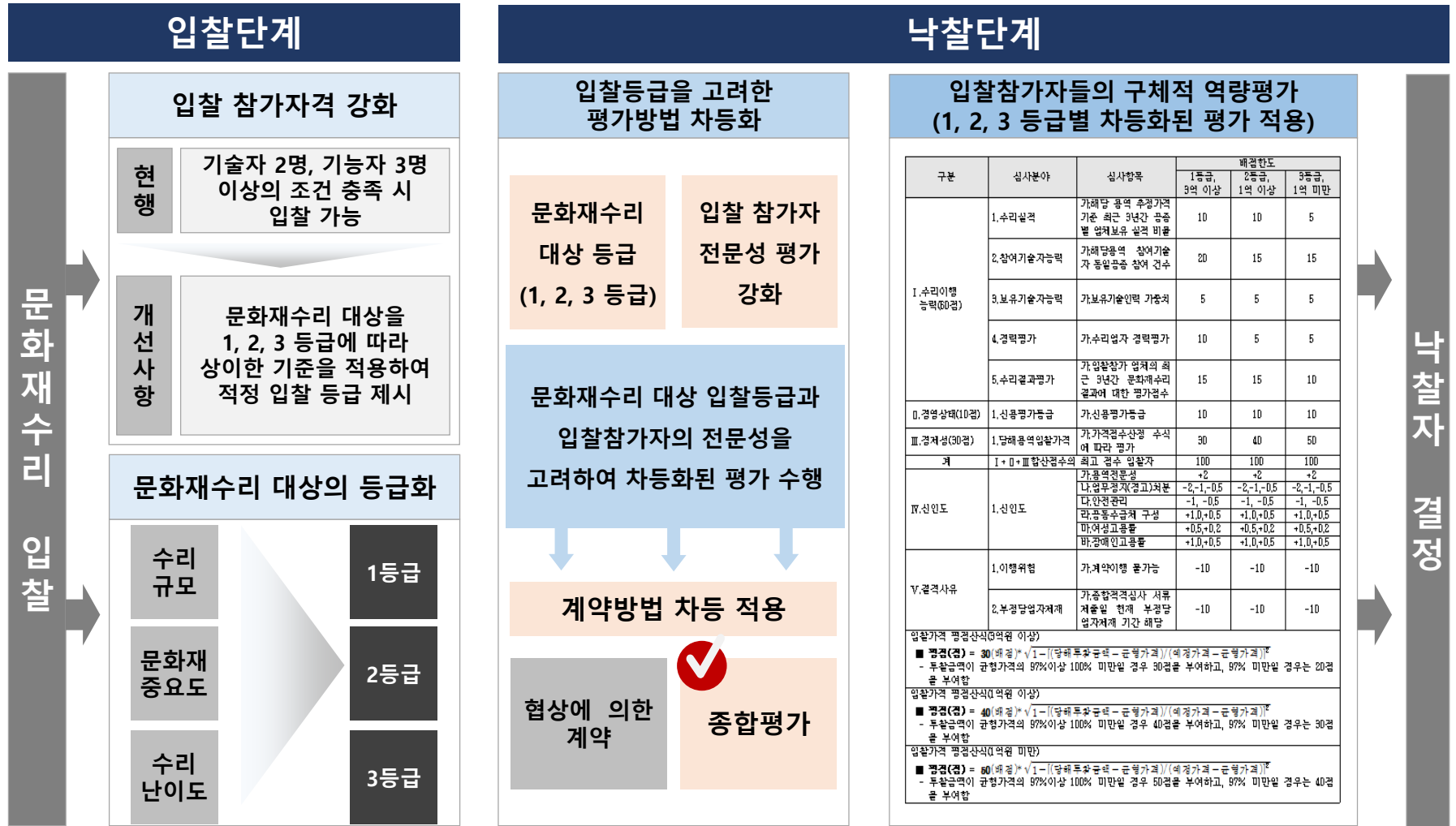
수리 대상 문화재에 적합한
수리능력 평가 기준 부재

- **수리 대상 문화재의 중요도 및 수리기법과 공법의 난이도와 관련 없는 평가 기준**으로 인해 안정적인 문화재 수리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는 등 수리품질 저하 발생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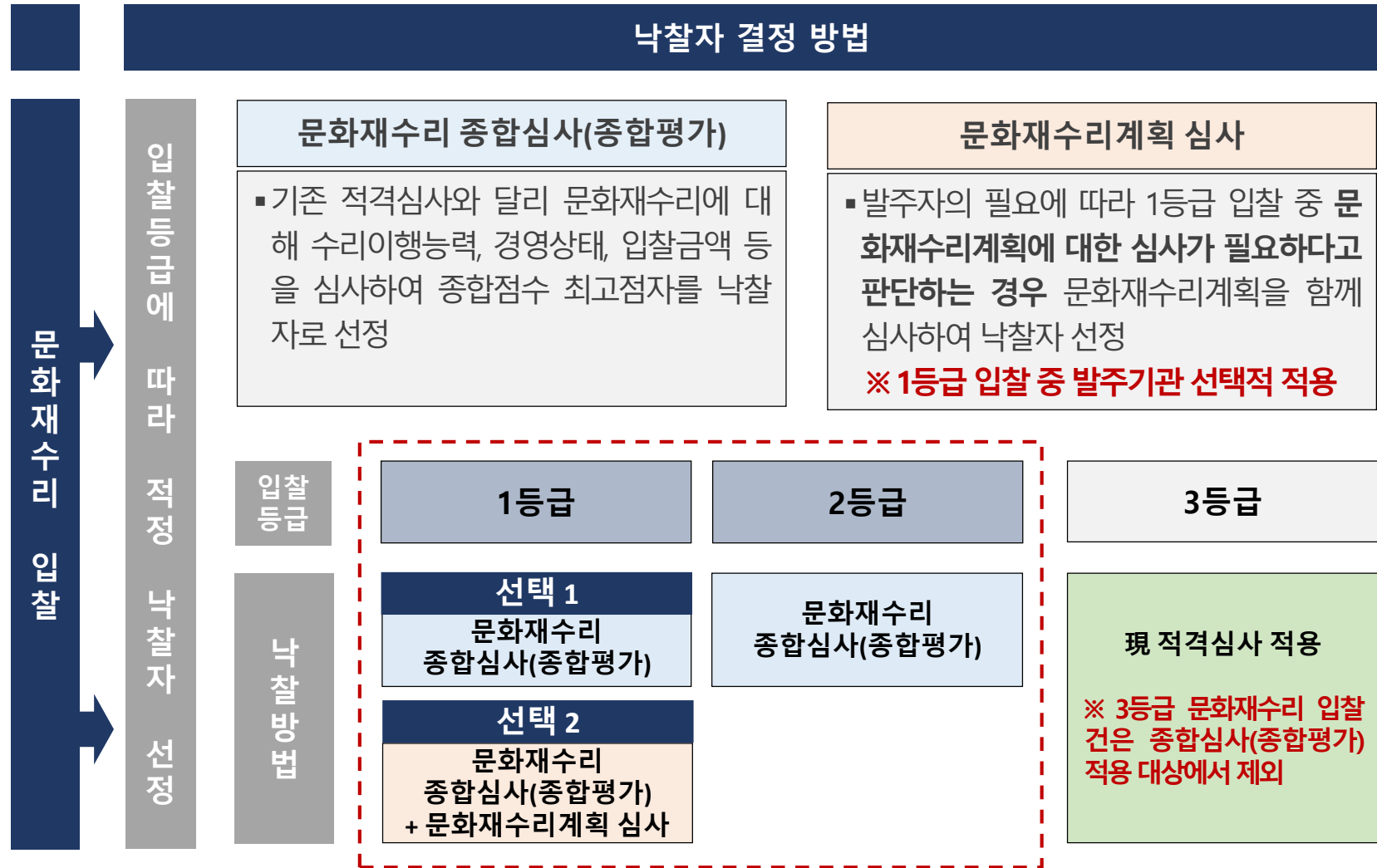
-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부정적 인식 증가**로 문화재 관리정책에 대한 불신 팽배

1.2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개요



법·제도적 기반(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기재부 계약예규, 행안부 예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등의 개정)

1.3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주요내용



1.4 주요 진행 경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조달청,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결정

'14.04

-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T/F 구성

'14.07~'15.01

- 1차~8차 T/F 회의 진행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초안) 마련 및 확정

'15.07~'16.01

- 9차~13차 T/F 회의 진행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초안) 시뮬레이션 및 모의입찰

'16.02~08

- 14차~16차 T/F 회의 진행
- 기재부·행자부·조달청 등 관계 부처 협의 및 계약예규(안) 마련 및 확정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에 따른 설명회 실시 및 시범사업 모니터링 등 개정안 도출 준비

'16.09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제정
 - (국가계약법관련) 문화재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문화재청 예규 제 169호, '16.09.19)
 - (지방계약법 관련)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16.09.21)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 기준) 적용 대상 문화재수리 총 15건 고시

'16.10~12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 기준) 시범사업 발주자 대상 설명회 실시('16.10)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 기준) 지역별 설명회 실시
 - 일자 및 장소: 대전(10.13), 부산(10.17), 대구(10.19), 서울(10.20), 광주(10.24)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 업무매뉴얼배포('16.11)
- 17차 T/F 회의 진행('16.12)

'17.01~'17.03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 문화재수리 총 45건 추가 고시('17.01~02)
- 18차 T/F 회의 진행('17.03)
- 2차년도 시범사업 발주자 대상 설명회 실시('17.03)
- 2차년도 지역별 설명회 실시
 - 일자 및 장소: 대전(03.16), 대구(03.21), 서울(03.23)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입·낙찰 자료 수집 진행('17.02월 기준 총 3건)

'17.04~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입·낙찰 자료 수집 진행('07.08월 기준 총 15건)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 (국가계약법관련) 문화재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문화재청 예규 제 180호, '17.07.05)
 - (지방계약법 관련)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17.07.26)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1건 추가 고시('1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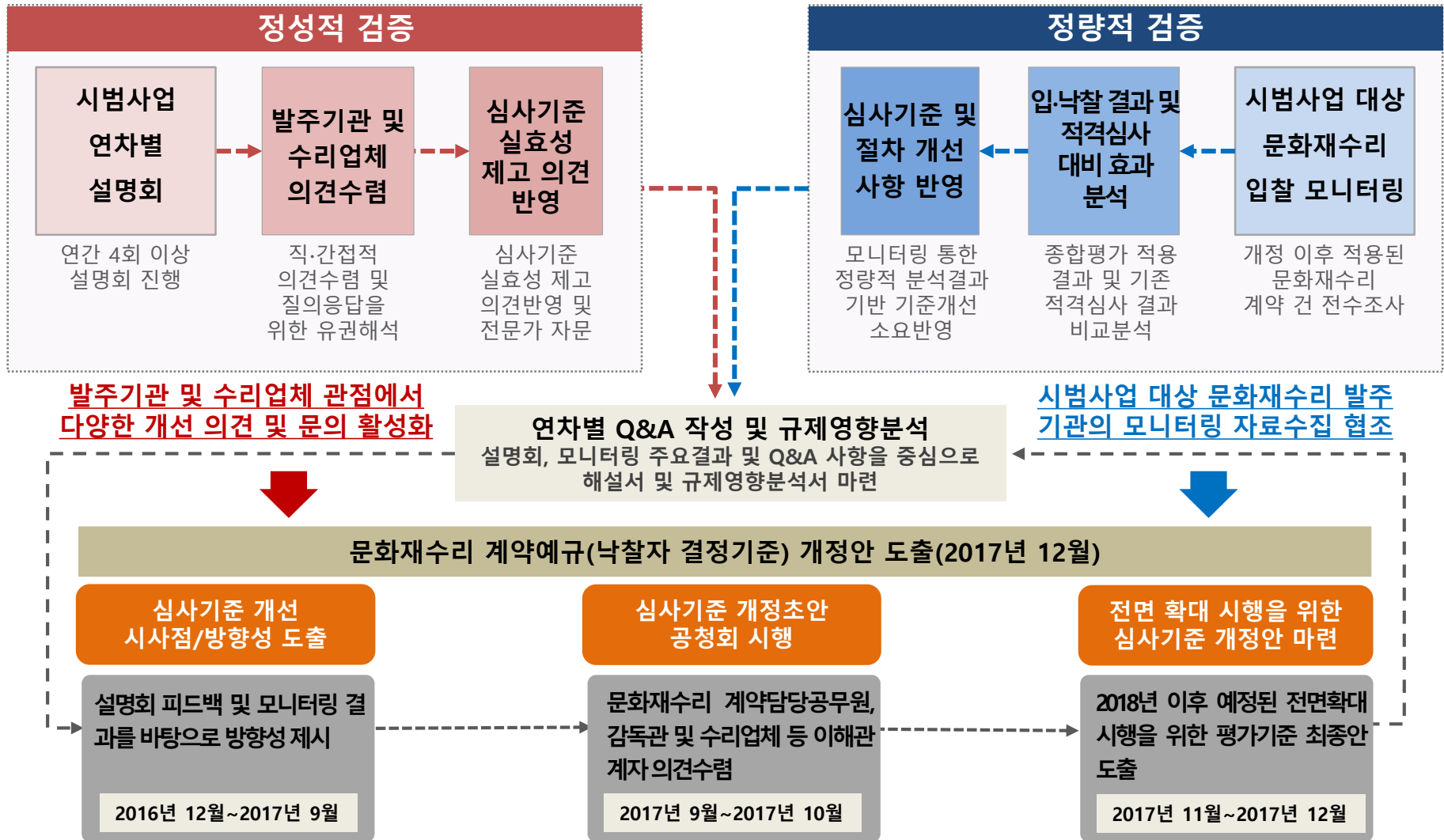
PART 2.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시범사업

001. 시범사업 개요

002. 시범사업 진행현황

003. 시범사업 대상 문화재수리 목록

2.1 시범사업 개요



2.2 시범사업 진행현황

■ 적용기준별 진행현황

- '16년 9월을 기점으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9건,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 문화재수리 52건으로 총 61건이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이후 장기계속공사, 발주기관의 공사일정 등의 사유로 7건 제외)
- 현재('17'년 10월 23일 기준) 총 54건 중 26건이 발주되었으며, 이중 21건이 낙찰자 선정이 완료됨

구분	내용	종합심사	종합평가	계	비고
고시현황	고시건수	9	52	61	
	제외건수	2	5	7	
	소계	7	47	54	
시범사업 진행현황	입찰 진행 건수	-	4	4	
	개찰 완료 건수	-	1*	1	10/26 낙찰완료 확인
	낙찰 완료 건수	5	16	21	
	소계	5	21	26	
잔여 입찰 건수		2	26	28	

2.2 시범사업 진행현황

■ 입찰등급별 진행현황

- 입찰등급에 따라 추정가격 구간별로 살펴보면 현재('17년 10월 말 기준)까지 발주된 **총 26건 중 19건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에 발주된 공사로 이는 전체의 **73%를 차지함**
- 5억원 이상의 **전국 대상 공사는 10건(지역의무공동도급 2건 포함)**으로 전체 발주 건수의 **38%를 차지함**
- 또한 모니터링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공고기관으로부터 낙찰자 선정이 완료된 21건 중 **19건(표본수 304개)에 대한 업체별 종합점수 자료를 회수함**

구분	1등급	2등급	계	비고
총 발주 건수	16	10	26	
100억 이상	1	-	1	
50억~100억	-	-	-	
10억~50억	2	-	2	
3억~10억	12(9)	7(1)	19(10)	()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전국 대상 공사 건수
3억 미만	1	3	4	
낙찰 완료 건수	14	7	21	
자료 수집 건수	12	7	19	
자료 수집 표본수	201	103	304	입찰포기 표본수 제외

2.3 시범사업 대상 문화재수리 목록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적용 문화재수리(문화재청 예규 제 169호, '16.09.19)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진행현황	비고
1	서울	종로구	사적123	창경궁	창경궁 화장실 건립		문화재청 고시 제2016-84호, '16.09.27
2	서울	종로구	사적121	사직단	사직단 부대시설 정비	낙찰 완료	
3	서울	종로구	사적122	창덕궁	창덕궁 매표소 주변 등 종합정비		
4	경기	여주시	사적195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영·영릉유적 종합정비공사(2단계)	낙찰 완료	문화재청 고시 제 2017-5호, '17.01.11
5	서울	종로구	사적123	창경궁	북동측 외곽담장 등 시설물 보수	낙찰 완료	문화재청 고시 제 2017-22호, '17.02.14
6	서울	중구	사적121	사직단	사직단 관리사무소 건립(1차)	낙찰 완료	
7	경기	구리시	사적193	구리 동구릉	구리 동구릉(송릉)-연자 정비		
8	경기	화성시	사적206	화성 용릉과 건릉	용건릉 잔입부 정비		
9	충남	아산시	사적155	아산 이충무공 유허	현충사 경내 유적정비	낙찰완료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문화재수리(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16.09.21)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진행현황	비고
1	서울		사적162	북한산성	대성문 및 육축 해체보수	낙찰 완료	문화재청 고시 제 2016-85호, '16.09.27
2	부산	금정구	사적215	금정산성	서문 성곽 해체 및 보수	제외(계속사업)	
3	경기	포천시	사적403	포천 반월성	성곽보수		
4	전남	나주시	사적483	나주목 관아와 향교	발굴지 정비		
5	서울	종로구	사적1120	서울 문묘와 성균관	향문복원재단설치, 담장및협문등보수	낙찰 완료	
6	강원	원주시	사적447	원주 영원산성	성곽복원		
7	충남	부여군	사적58	부여 나성	유구정비	낙찰 완료	
8	충남	아산시	중만233	아산 건재고택	고택 보수	제외(규모축소)	
9	전북	남원시	국보10	남원 실상사 백암암 삼층석탑	적목당 복원		
10	전북	전주시	보물583	전주 풍패지관	서익현 드잡이 보수 및 정비		

2.3 시범사업 대상 문화재수리 목록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진행현황	비고
11	울산	중구	사적320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동문 복원		문화재청 고시 제 2017-23호, '17.02.14
12	제주	서귀포시	중민188	성읍민속마을	성곽정비	낙찰 완료	
13	서울	송파구	사적297	서울 몽촌토성	탐방로 정비	낙찰 완료	
14	서울	종로구	보물142	서울 동관왕묘	화계정비, 배수로 정비		
15	서울		사적10	서울 한양도성	숙정문 문루, 창의문 협문 보수	낙찰 완료	
16	서울		사적10	서울 한양도성	성벽붕괴구간 보수		
17	부산	금정구	사적215	금정산성	탐방로 정비	낙찰 완료	
18	인천	강화군	사적225	강화 초지진	성곽보수	낙찰 완료	
19	인천	강화군	사적452	강화 외성	육축 복원		
20	경기	광주시	사적57	남한산성	송렬전 해체보수	낙찰 완료	
21	경기	파주시	사적323	파주 윤관장군묘	재실 및 외삼문 보수		
22	강원	동해사	보물1292	동해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	적광전 해체보수	제외(민간)	
23	강원	영월군	사적446	영월 정양산성	북문지 보수정비	낙찰 완료	
24	충북	증평군	사적527	증평 추성산성	탐방로 정비		
25	충북	청주시	사적212	청주 상당산성	수문 및 성곽발굴지 정비		
26	충남	공주시	사적12	공주 공산성	관람환경조성 및 주변정비		
27	충남	공주시	사적387	공주 우금치 전적	위령탑 보수 및 주변정비	10월27일 개찰	
28	충남	보령시	사적501	보령 충청수영성	동문루 복원 및 성벽정비		
29	충남	서산시	사적116	서산 해미읍성	성곽보수	11월 8일 개찰	
30	충남	홍성군	사적231	홍성 홍주읍성	수구유적 정비, 북문 복원		
31	전북	고창군	사적145	고창읍성	동문육축 해체보수 및 주변정비		

2.3 시범사업 대상 문화재수리 목록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진행현황	비고
32	전남	나주시	사적337	나주읍성	서성벽 정비, 서수구문원 복원		문화재청 고시 제 2017-23호, '17.02.14
33	경북	경주시	보물442	경주 양동 관가정	관가정 해체보수		
34	경북	경주시	사적47	경주 명활성	북문지 성곽 복원정비 및 주변정비	10월 25일 개찰	
35	경북	경주시	사적16	경주 월성	해자 복원		
36	경북	경주시	사적18	경주 동궁과 월지	침전권역 복원(서편 건물지 복원)		
37	경북	경주시	사적512	경주 대릉원 일원	금관총 복원		
38	경북	경주시	사적6	경주 황룡사지	담장정비		
39	경북	고령군	사적79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분 정비 및 주변정비		
40	경북	문경시	사적147	문경 조령 관문	성벽 보수	낙찰 완료	
41	경북	성주군	보물1575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만화루 복원, 수복사 이건	낙찰 완료	
42	경북	청송군	보물1840	청송 보광사 극락전	선방건립		
43	경남	창녕군	사적514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분 복원	제외(계속사업)	
44	경남	창원시	보물1729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범종루 건립		
45	경남	하동군	사적453	하동읍성	용지 보수 및 성곽정비		
46	경남	함안군	사적515	함안 말이산 고분군	고분 복원정비	낙찰 완료	
47	경남	함양군	보물1691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극락보존 보수	낙찰 완료	
48	경남		사적113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제승당 등 13동 단청	10월 26일 개찰	
49	제주	서귀포시	천기4120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관람데크시설 정비		
50	제주	제주시	사적380	제주목 관아	목관아 단청 및 바닥정비	제외	
51	제주	제주시	사적134	제주 삼성혈	담장보수	낙찰 완료	
52	경기	파주시	사적 537	덕진산성	성벽보수	낙찰 완료(10/26)	신규 추가 고시

PART 3.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방법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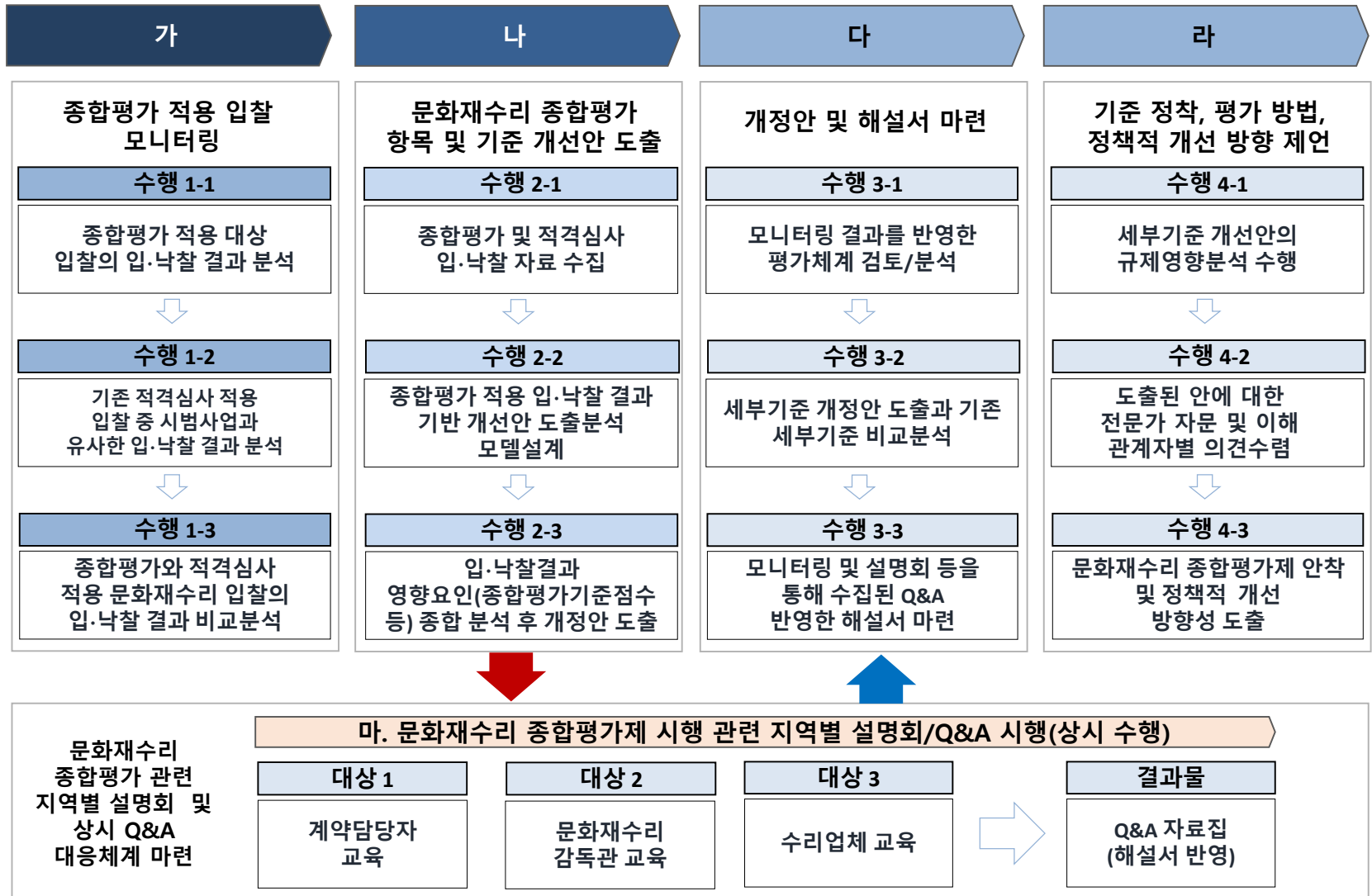
001. 모니터링 연구내용 및 방법

002. 모니터링 정성분석

003. 모니터링 정량분석

3.1 모니터링 연구내용 및 방법

■ 모니터링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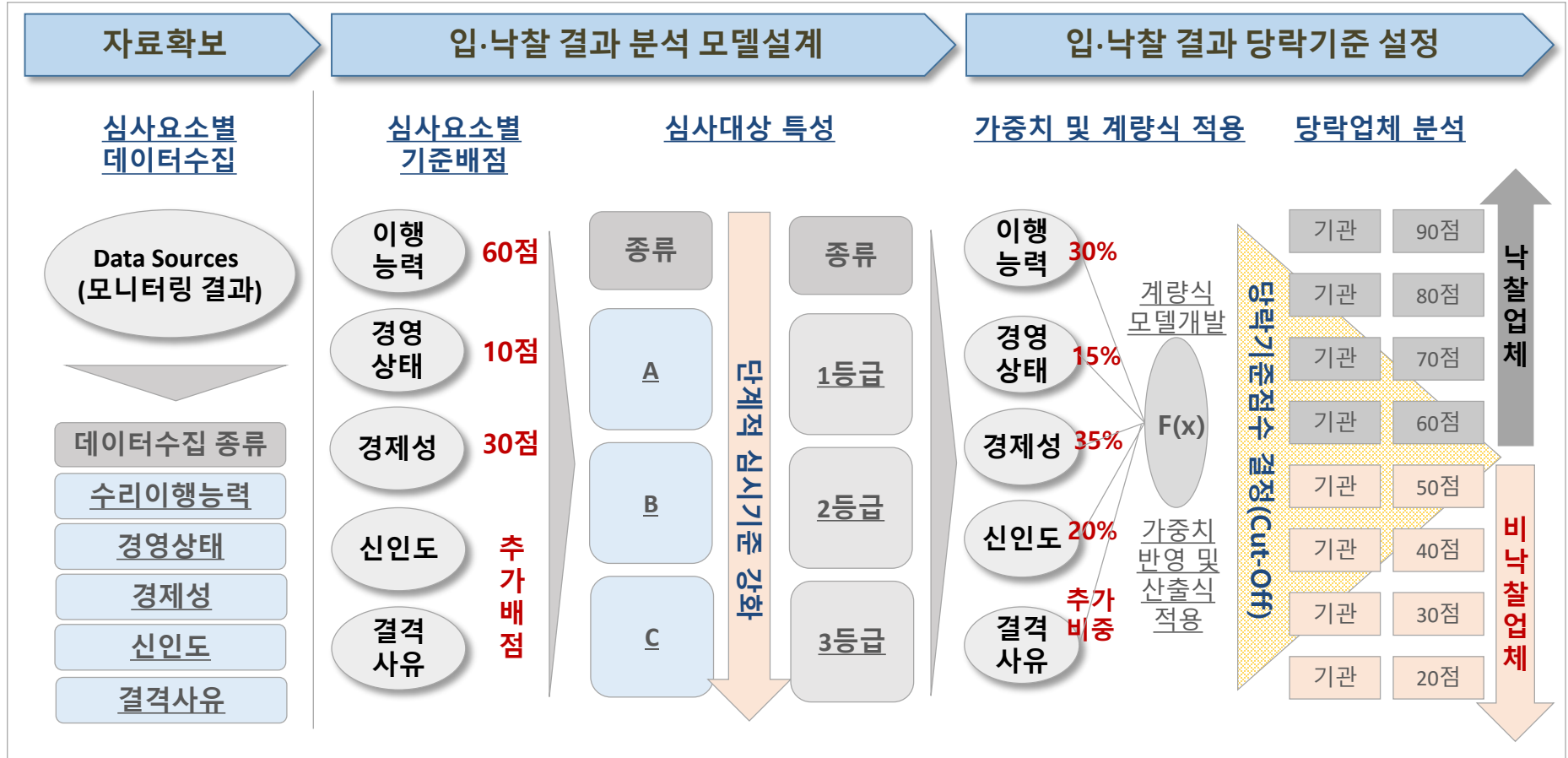


3.1 모니터링 연구내용 및 방법

■ 모니터링 연구방법

시범사업 대상 문화재수리 입·낙찰 결과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문화재수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안) 도출

시범사업 대상 문화재수리
입·낙찰결과 분석 모델설계



3.2 모니터링 정성분석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발주된 26건 중 검토쟁점이 있는 6건을 중점으로 입찰공고문 및 자기평가서 검토내용

일자	공고번호	공고명	수요기관	공고기관	내용
'16.11	20161121040	사직단 부대시설 정비 공사	문화재청	조달청	- 입찰공고를 위한 심사기준 검토 - 자기평가서 검토
'16.12	20161210864	서울 문묘와 성균관 향문 복원 등 정비공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입찰공고를 위한 입찰공고문 검토 - 자기평가서 검토
'17.01	20161235215	북한산성 대성문 해체 보수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특별시	- 자기평가서 및 자기평가 증명서 검토
'17.03	20170315758	한양도성 숙정문 해체보수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특별시	- 자기평가서 및 자기평가 증명서 검토
'17.06	20170529559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정비공사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성주군	- (1차) 낙찰1순위 업체 자기평가서 및 자기 평가 증명서 검토 - (2차) 낙찰1순위, 낙찰2순위 자기평가서 및 자기평가 증명서 비교검토
'17.07	20170630317	2017. 금정산성 역사탐방로 조성공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 균형가격 산정 검토 - 배치기술자, 보유기술자 및 기능자 평가 검토

3.2 모니터링 정성분석

■ 주요 질의응답

- '16년 9월 시범사업 시행 이후 유·무선을 통해 접수된 주요 질의응답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정리함

구분	질문내용	질문답변
수리 실적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1차년도에 대해 실적 인정이 되는지?	▪ 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 기준이므로 인정 안됨
배치능력 평가	▪ 착공일이 최근 5년 이내에 포함되지 않아도 전체 기간을 문화재수리기간으로 계산하는지? ▪ 동등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배치기술자 없을 경우 0점을 받는지?	▪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일 경우 전체기간을 인정함 ▪ 환산건수가 0건일 경우 각 등급별 최저점수를 받게 됨.
보유능력 평가	▪ 보유기술자(기능자) 경력계수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업체가 보유한 보유기술자(기능자)의 경력 및 인원수에 맞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답변함
공동수급체	▪ 공동수급체 시공비율을 평가기준에 곱하는지, 심사점수에 곱하는지?	▪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함
실적증명서	▪ 기존의 실적증명서는 사용이 불가능한지?	▪ 기존 적격심사 실적증명서와는 양식이 상이하므로 새로 발급받아야 함
수리코드	▪ 수리코드 첫 번째 자리가 다른데 동등이상 문화재 수리로 인정이 되는지?	▪ 두 번째, 세 번째 코드가 같다면 동등이상 문화재 수리로 인정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발급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내역서 발급은 어떻게 받는 지?	▪ 2017년 1월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가 고용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방법으로 안내

3.2 모니터링 정성분석

■ 개정안 검토의견

- '16년 9월 시범사업 시행을 기점으로 지역별/시범사업 대상 설명회 등 접수된 주요 개선 건의사항,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T/F회의에서 결정된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시범사업 모니터링 분석결과를 통해 제시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연번	현행	개선 건의사항	비고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심사	1	▪ [별표5]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주3) : 문화재수리기간 및 해당문화재수리 현장 배치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사중지 기간을 포함한다.	▪ 착공일이 최근 5년 이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전체기간을 문화재수리기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 설명 필요 ▪ “최근 5년간”에 대한 기준 정의가 수리 실적 부분에만 명시되어 있음(입찰공고일부터 어느 시점까지 최근 5년인지 명시 불명확)	개정안 검토
	2	▪ [별표5] 8)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가 입찰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 배치기술자 6개월 미만 80% 감점하는 경우 배치기술자 건수가 없는 경우보다 평점이 낮아지는 경우에 대한 보완방안(80% 감점 적용 시 최저등급 평점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점수까지만 반영)마련 필요	개정안 검토
보유기술자 및 기능자 심사	3	▪ 관련 내용 없음	▪ 전문문화재수리업체는 종합문화재수리업체 대비 보유인원 과소로 신인도 가점 받아도 종합문화재수리업체 대비 불리한 평가 문제점 완화(전문문화재수리업체 별도의 보유인력 평가기준 도입 검토)	향후 전문문화재수리업 활성화 측면에서 법령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

3.2 모니터링 정성분석

■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구분	연번	현행	개선 건의사항	비고
안전관리 심사	4	▪ (당초) [별표5] 5. 신인도 심사 라. 안전 관리 심사 주 4) '건설업 재해율의 가중평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행한 산업 재해통계의 최근 3년 간 '건설업'기준 재 해율의 가중평균으로 한다. ▪ (현행) [별표5] 5. 신인도 심사 라. 안전 관리 심사 주 4) : 건설업 재해율의 가중평균'은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한다.	▪ 건설업 재해율의 가중평균'을 '산업재해 율확인서'에 있는 동일업종 재해율로 오인 하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既 개정 사항
분담이행 공동수급 심사방법	5	▪ (당 초) 관련 내용 없음 ▪ (현행) 분담이행방식(복합업종으로 심 사 하 는 경 우 를 포 함 한 다)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 분담이행 시 업종별 비율 작성 및 산식방법 등 분담이행 에 대한 설명 없으므로 추가가 필요함	既 개정 사항
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	6	▪ 관련 내용 없음	▪ 전문교육 같은 경우 1년에 7회만 개설되며, 신청자가 많아 등록이 어려움. 따라서 신규취득자에 대한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 검토

3.2 모니터링 정성분석

■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구분	연번	현행	개선 건의사항	비고
실정증명서 관련	7	기존 적격심사 용 실적증명서와 구분하여 발급	기존 적격심사 용 실적증명서와 종합평가 실적증명서의 양식이 다르다 보니 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되는데 통일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부처 협의사항
경영상태 심사 공동수급체 심사 방법	8	(당 초) 관련내용 없음 (현 행) [별표6] 1. 자산 및 유동비율에 의한 심사 주)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별표 6] 경 영 상 태 세 부 심 사 방 법 주석에도 공동수급체 심사방법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현재 계약예규 제14조제2항제2호에만 명기되어 있음	既 개정 사항
문화재수리 계획심사	9	관련 내용 없음	- 평가항목에 부합하는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명시 없음 - 문화재수리 1등급 입찰 중 문화재수리 계획심사 대상 입찰의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로 1.실측설계도서, 2.특기시방서, 3.현장설명회 등의 내용을 심사기준 또는 입찰공고문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붙임1참조] - 실측설계용역 결과물 제공이 불가하다면 이를 대체하여 어떠한 자료가 제공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개정안 검토

3.2 모니터링 정성분석

■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구분	연번	현행	개선 건의사항	비고
신설업체와 공동수급 관련	10	관련 내용 없음	수리업경력 심사에서 신설업체와 공동수급 시 시공비율에 관계없이 유리한 업체 경력만 인정	개정안 검토
전문문화재 수리업과 공동수급	11	관련 내용 없음	전문문화재수리업 공동수급체 가점 시 100만원 등 부대입찰공사 가능 소규모 인 경우 공동수급 인정의 적정성(추후 전문수리업체 공동수급체 구성 인정 최저 하한 금액 설정)	既 개정 사항
경제성 심사	12	투찰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평가기준 급간이 1%(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미만 시)로 상대적으로 커 만점자 다수 발생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평가기준 급간을 1% 미만으로 세밀하게 조정 필요	개정안 검토

3.3 모니터링 정량분석

■ 시범사업 및 기존 적격심사 입·낙찰 결과 비교

- '17년 10월 말 기준(10/23) 낙찰자 선정이 완료된 22건에 대한 입·낙찰 결과와 기존 적격심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 **평균 투찰자 수 약 3개사 감소 / 평균 낙찰률 0.922% 감소**
 - 평균 투찰자 수는 기존 적격심사 평균 투찰자 수 약 23개사 대비 3개사가 감소한 20.1개사로 나타났으며, 100억 이상 공사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기존 적격심사 대비 투찰자 수가 감소함** → **상대적으로 역량 있는 업체 간 경쟁구도 형성**이라는 기준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평균 낙찰률은 87.036%로 기존 적격심사 대비 낙찰률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100억 이상 공사의 경우 86.755%로 2.948% 높은 낙찰률을 보임 → **규모가 큰 공사에서는 적정대가를 보장**한다는 제도 도입 목적과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됨
 - 또한 **발주건수가 증가할수록 낙찰률은 상승 추세에 있어**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더 상승할 것으로 판
- *'17년 6월(5건)/8월(16건)/10월(21건) 순으로 86.846% → 87.015% → 87.036% → **87.076%(10/26낙찰건 포함)**

추정가격 구간	시범사업 대상			적격심사 대상*		
	건수	평균 투찰자수	평균 낙찰률(%)	건수	평균 투찰자수	평균 낙찰률(%)
100억 이상	1	22.0	86.755	2	19.5	83.807
50억 이상 ~ 100억 미만	-	-	-	6	20.0	86.628
10억 이상 ~ 50억 미만	2	10.5	86.584	120	43.3	86.900
3억 이상 ~ 10억 미만	16	21.9	86.997	457	30.9	87.036
3억 미만	2	14.5	87.940	2,782	20.8	88.161
계	21	20.1	87.069	3,367	23.0	87.958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주된 문화재수리 공사 중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한함
 - 자료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3.3 모니터링 정량분석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낙찰결과 분석

- '17년 10월 말 기준 낙찰자 선정이 완료된 21건을 대상으로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의 전국 대상 입찰(지역의무공동도급 포함) 및 5억 원 이하의 지역제한 입찰을 대상으로 입·낙찰 결과를 분석한 결과,
 - 전국 대상 입찰의 평균 투찰자 수는 34.4개사**로 지역제한 입찰보다 약 3.7배 많게 나타났으며, **평균 낙찰률은 86.919%**로 지역제한 입찰에 비해 0.205% 낮게 나타남

구분	전국 대상 입찰			지역제한 입찰		
	1등급	2등급	계	1등급	2등급	계
건수	8	1	9	6	6	12
평균 투찰자 수	29.4	75.0	34.4	7.8	11.0	9.4
평균 낙찰률(%)	86.979	86.441	86.919	87.192	87.056	87.124

심사요소별 낙찰자 결정요인 분석

- 종합점수 자료가 수집된 19건 중 **10건이 수리이행능력점수 최고점자(1위)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이외 수리이행능력점수 최고점자가 아니면서 낙찰자로 선정된 9건 중 **5건은 경제성점수가 높아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1건은 경영상태 심사 점수 우위**로 낙찰자 선정되는 결과가 도출됨

결정요인	낙찰건수	비고
수리이행능력	10	- 신인도 포함점수
경제성	5	
경영상태	1	
기타	3	- 종합점수 만점(2건) / 종합점수-수리이행능력점수동점(1건)
계	19	

3.3 모니터링 정량분석

■ 시범사업 입·낙찰 결과 요약

연 번	적용 기준	입찰 등급	수리 코드	지역 제한	입찰공고명	추정가격 (천원)	투찰 자수 (n)	표본 수 (n)*	낙찰률 (%)	낙찰자 개찰순 위
1	중심	1등급(비)	121	전국	사직단 부대시설 정비공사	675,190	37	29	87.238	12
2	중평	1등급(비)	111	서울	서울 문묘와 성균관 향문 복원 등 정비공사	452,727	6	4	86.517	1
3	중평	1등급(비)	122	전국	북한산성 대성문 해체,보수공사	1,273,063	10	10	86.871	4
4	중심	1등급(비)	121	전국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공사(2단계)	14,431,430	22	22	86.755	13
5	중평	1등급(비)	111	서울	한양도성 숙정문 해체보수공사	303,480	2	2	86.849	1
6	중평	1등급(비)	211	전국	성주향교대성전및명륜당정비공사	665,247	25	14	87.757	7
7	중평	1등급(비)	122	인천	강화 초지진 정비공사	309,090	4	0	87.647	2
8	중심	1등급(비)	111	전국	창경궁 북동측 담장 보수공사	596,900	68	42	86.349	25
9	중평	2등급	121	서울	서울몽촌토성 보수정비 탐방로 철거공사	172,595	11	4	86.908	3
10	중평	2등급	121	충남	부여나성 발굴지 정비사업	230,719	18	9	88.971	10
11	중평	2등급	116	제주	2017년 제주 삼성혈 정비사업 (담장보수)	486,793	6	6	87.807	3

3.3 모니터링 정량분석

연 번	적용 기준	입찰 등급	수리 코드	지역 제한	입찰공고명	추정가격 (천원)	투찰 자수 (n)	표본 수 (n)*	낙찰률 (%)	낙찰자 개찰순 위
12	종평	2등급	122	제주	성읍민속마을 노후성곽 복원정비사업	470,885	3	3	85.113	2
13	종평	2등급	122	경북	문경 조령관문(3관문) 보수공사	393,306	21	18	86.890	4
14	종평	2등급	122	전국	금정산성 역사탐방로 조성공사	735,200	75	56	86.441	43
15	종평	2등급	122	강원	영월 정양산성 북문지 보수정비 공사	306,052	7	7	86.644	6
16	종심	1등급(비)	113	전국	사직단 관리사무소 건립공사(건축)(1차)	840,610	36	28	87.474	12
17	종심	1등급(비)	121	전국	현충사 경내 유적정비사업	645,350	26	25	87.092	10
18	종평	1등급(비)	111	전국 (경기)**	송렬전 해체보수공사	1,802,799	11	10	86.296	7
19	종평	1등급(비)	111	경남	함양 법인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극락보전 보수공사	444,291	10	9	87.083	1
20	종평	1등급(비)	111	경기	파주 윤관장군묘 주변정비	336,200	12	9	86.796	3
21	종평	1등급(비)	121	경남	함안 말이산 고분군 복원공사	471,430	13	-	88.260	5

*가격 또는 수리이행능력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 제외

** 지역의무공동등급

PART 4. 개정안 검토

001. (既) 주요 개정 내용

002. 개정안 검토

4.1 (既) 주요 개정 내용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 반영 및 '16년 9월 시범사업 시행 이후 유·무선, 지역별 설명회 및 시범사업 발주자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접수된 개선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
- ✓ 아래 내용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제정된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당초: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16.09.21 / 개정(현행):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17.07.26)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번	구분	당초	개정(현행)	비고
1	조문 제8조제4항	제8조(입찰서 등의 제출) ④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입찰서 등의 제출) ④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및 문화재수리 계획서는 제외한다) 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없는 입찰서류 변경
2	조문 제14조제1항	제14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부대문화재수리만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동수급체 심사 시 심사제외 대상 신설

4.1 (既) 주요 개정 내용

연번	구분	당초	개정(현행)	비고
3	조문 제14조제2항	제14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 략) 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제14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 략) 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복합업종으로 심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분담이행 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방법 신설
4	조문 제16조제2항	제16조(낙찰자 결정) ② 종합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낙찰자 결정) ② 종합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문화재수리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자(문화재수리계획 심사대상 문화재수리에 한다) 2. 수리이행능력점수가 높은 자(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적용한다) 3. 입찰금액이 낮은 자 4. 추첨	최고점자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 순서 변경
5	[별표 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별표 1] 중요민속문화재	[별표 1]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 용어 변경
6	[별표 2] 문화재수리 분류표	[별표 2] ※ 유적지 :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 면단위로 지정된 문화재구역	[별표 2]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유적지 용어 명확화

4.1 (既) 주요 개정 내용

연번	구분	당초	개정(현행)	비고
7	[별표 3-1] 입찰 등급 1등급 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3-1] 보수교육	[별표 3-1] 전문교육	문화재수리법 개정에 따라 '보수교육'용어 변경 (이하 동일용어 동일변경)
8	[별표 5] 수리이 행능력 세부심사 방법 - 수리 실적 심사	[별표 5] 1)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능력평가를 위해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나)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민간발주에 한함) 다)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민간발주에 한함) * 민간발주 :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발주한 공사	[별표 5] 가.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능력평가를 위해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1)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3) "1) 및 "2)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1) 및 "2)에 따른 문화재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다)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이하 기준 참조)	실적 증빙서류를 수리능력 평가 신청서류 기준으로 변경(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동일)

4.1 (既) 주요 개정 내용

연번	구분	당초	개정(현행)	비고
9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 방법-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심사	[별표 5] 바) 고용보험피고험자격내역서(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각각 제출)	[별표 5]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입사일 증빙서류 추가 (보유기술자 및 기능자 심사도 동일)
10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 방법-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심사	[별표 5]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별표 5]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확인서류 추가
11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 방법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심사	[별표 5] 4) 해당 자격 취득 년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 이상 근무자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상시 근무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등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동일한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를 말한다)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면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별표 5] 라. 해당 자격 취득 년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180일) 이상 근무자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등이상의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로 입사일이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이고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합산(1회에 한하여 합산할 수 있다)하여 6개월(180일) 이상이면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근무기간 (6개월) 산정 시 합산조건 구체화

4.1 (既) 주요 개정 내용

연번	구분	당초	개정(현행)	비고
12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 방법- 영업정지 처분 심사	(신 설)	[별표 5] 3) “최근 5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영업정지 처분 심사 시 기준일 명확화
13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 방법- 안전관리 심사	[별표 5] 4) ‘건설업 재해율의 가중평균’ 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행한 산업재해통계의 최근 3년 간 ‘건설업’기준 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한다.	[별표 5] 4) ‘건설업 재해율의 가중평균’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한다.	안전관리 심사 시 건설업 재해율 기준 명확화
14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 방법-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별표 5]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 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 하여 심사한다.	[별표 5]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 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 하여 심사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된 문화재수리의 업종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심사대상 문화재수리의 업종 내 공동 수급체 구성에 한하여 심사한다.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 가점적용 기준 명확화
15	[별지 제6호 서식]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신 설)	[별지 제 6호 서식] 발급기준일	발급 기준일 명기란 추가

4.2 개정안 검토

- '16년 9월 시범사업 시행을 기점으로 접수된 주요 개선 건의, 시범사업 모니터링 분석결과,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T/F회의 검토결과('17년 8월말)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 후 제시된 주요 개정안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아래 내용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17.07.26)"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연번	구분	개정안 내용
1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수리실적 심사	▪ 수리실적 평가기준 비율 하향 조정
2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 '최근 5년'에 대한 기준일 명확화 ▪ 6개월 미만 배치기술자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 ▪ 평가기준인 환산건수에 대한 급간을 조밀하게 조정
3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수리업경력 심사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 하는 대상에 신생업체 추가
4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안전관리심사	▪ '최근 3년'에 대한 기준일 명확화 및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할 사항 (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 추가
5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	▪ 신규취득자에 대한 유예기간 6개월 적용
6	[별표 7] 경제성 세부심사방법-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평가기준 및 평가점수 급간 조정
7	[별표 9] 문화재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 평가항목에 부합하는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 추가

4.2 개정안 검토

1 수리실적 심사 - 수리실적 평가기준 비율 하향 조정

- 기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우, 문화재공사 수리실적 산정 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사에 3배수를 적용하고 있음.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2배수,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이 1배수(단,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경우 1/2배수)를 적용함
- 또한 수리실적 완화로 중소건설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방향성에 맞춰 최근 실적비중을 줄여나가는 추세임
- 대부분의 문화재수리 공사가 10억원 미만임을 고려할 때, 기존 1/2배수에 비해 3배수는 너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리실적 평가기준 비율을 하향 조정함

현행						
심사 분야	심사 요소	배점	평가 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수리 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 수리 실적	20 (10)	A. 300% 이상	20.0	10.0	20.0
			B. 200% 이상	19.3	9.65	19.5
			C. 100% 이상	18.6	9.30	19.0
			D. 100% 미만	17.9	8.95	18.5



개정안						
심사 분야	심사 요소	배점	평가 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수리 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 수리 실적	20 (10)	A. 200% 이상	20.0	10.0	20.0
			B. 150% 이상	19.3	9.65	19.5
			C. 100% 이상	18.6	9.30	19.0
			D. 100% 미만	17.9	8.95	18.5

4.2 개정안 검토

2.1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 '최근5년'에 대한기준일 명확화

- '최근 5년간'에 대한 기준일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착공일이 '최근 5년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문화재수리기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동이 있음
- 따라서 개념의 혼동을 막기 위해 '문화재수리기간'에 대한 정의와 별도로 '최근 5년간'에 대한 기준일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현행

(신 설)



개정안

'최근 5년간'이란 착공일과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2.2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 6개월 미만 배치기술자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

- 6개월 재직 미만 배치기술자에 대해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했을 때 최저등급(D등급) 점수보다 낮아지는 경우 발생
- 이를 보완하기 위해 80%를 적용한 평가점수가 최저등급 평가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등급 평가점수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현행

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가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개정안

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가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다만, 80%를 적용한 평가점수가 최저평가점수(평가기준 'D'의 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평가점수로 적용한다.

4.2 개정안 검토

2.3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 평가기준인 환산건수 급간을 조밀하게 조정

- 종합점수 자료 19건을 토대로 배치 기술자 환산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표본수 304개 중 환산건수 5건 이상으로 배치기술자 평가에서 만점(1등급 10점, 2등급 7.5점)을 받은 경우는 4건으로 1.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4건 이상은 6건으로 1.9%를 차지함
- 전체 표본수의 약 97%가 C등급(4건 미만)으로 기본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앞서 분석한 표준편차 및 항목별 영향력과 상응하는 결과로 최고등급에 대한 평가기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만점을 받기 위한 배치기술자의 환산건수를 5건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만점이 적용되는 A등급의 환산건수를 5건에서 3건으로 하향조정하고 이하 등급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분화함

■ 배치 기술자 환산건수 분석

평가기준	1등급	2등급	계	평균	비고
A. 5건 이상	4	0	4	5.72	
B. 4건 이상	4	2	6	4.58	
C. 4건 미만	193(11)	101(10)	294(21)	- (2.03)	*()는 4건 미만 환산건수를 제출한 투찰자 수에 한함
3건 이상	2	2	4	3.61	
2건 이상	5	3	8	2.39	
1건 이상	3	3	6	1.15	
1건 미만	1	2	3	0.73	
계	201	103	304	- (3.00)	*()는 제출된 전체 환산건수에 대한 평균값

4.2 개정안 검토

2.3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 평가기준인 환산건수 급간을 조밀하게 조정

현행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 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 리계획심 사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 리계획심 사 대상)	2등급
배치 기술자 능력	최근 5년 간 해 당 문화재수 리 와 동 등 이 상 수 리 를 수 행 한 환산건수	10 (7.5)	A. 5건 이상	10.0	7.5	7.5
			B. 4건 이상	9.5	7.0	7.0
			C. 4건 미만	9.0	6.5	6.5
배치 기능자 능력		10 (7.5)	A. 5건 이상	10.0	7.5	7.5
			B. 4건 이상	9.5	7.0	7.0
			C. 4건 미만	9.0	6.5	6.5



개정안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 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 리계획심 사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 리계획심 사 대상)	2등급
배치 기술자 능력	최근 5년 간 해 당 문화재수 리 와 동 등 이 상 수 리 를 수 행 한 환산건수	10 (7.5)	A. 3건 이상	10.0	7.5	7.5
			B. 2건 이상	9.5	7.0	7.0
			C. 1건 이상	9.0	6.5	6.5
			D. 1건 미만	8.5	6.0	6.0
배치 기능자 능력		10 (7.5)	A. 3건 이상	10.0	7.5	7.5
			B. 2건 이상	9.5	7.0	7.0
			C. 1건 이상	9.0	6.5	6.5
			D. 1건 미만	8.5	6.0	6.0

4.2 개정안 검토

3. 수리업경력 심사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신생업체 관련 내용 추가

- 신설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하는 대상에 신설업체를 추가함

현행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한다.



개정안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한다.

다. “신설업체”란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4.2 개정안 검토

4. 안전관리 심사 : '최근 3년' 에 대한 기준일 명확화 및 입찰공고문 명시 관련 추가

- 매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의 지표가 되는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의 최근년도가 변경됨에 따라, 건설업 재해율과 입찰자 재해율간 '최근 3년'이 일치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3년'에 대한 기준일 명확화 및 혼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해당 입찰공고에 기준이 되는 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을 제시하도록 추가

현행

(신 설)

2) 재해율 가중평균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 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재해율 가중평균 =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 재해율×0.5 +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재해율×0.3 +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재해율×0.2]

단,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재해율 또는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중 략)

(신 설)

개정안

2) '최근 3년간'이란 입찰공고 시점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이 발표된 최근 3년을 말한다.

3) 재해율 가중평균은 **최근 3개년 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재해율 가중평균 = [최근년도×0.5 + 최근년도 1년전 재해율×0.3 + 최근년도 2년전 재해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중 략)

6) 해당 문화재수리 입찰공고에 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을 제시한다.



4.2 개정안 검토

5. 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 : 신규취득자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

- 전문교육 과정과 같은 경우 교육 개설시기 및 정원이 유동적으로 6개월 미만의 신규 보유기술자가 바로 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움
- 이러한 유동적인 교육 개설 환경을 고려하여 입사일이 6개월(180일) 이상인 보유기술자만 평가 대상에 포함
- 혼란최소화를 위해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심사'와 같이 6개월로 반영

현행

(신 설)

개정안

3)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사일이 6개월(180일) 이상이면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4.2 개정안 검토

6.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평가기준 및 평가점수 급간 조정

- 종합점수 자료가 수집된 19건에 대한 표본 304개를 토대로 경제성 점수를 분석한 결과, **만점자 비율이 평균 59%로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경제성 평가의 변별력은 낮아짐
 - 투찰금액 급간 대비 경제성 평가기준 급간(1%)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평가기준 급간을 조정
 - 총 19건의 평균 균형가격 비율 표준편차(1.22%)를 고려하여 기존 평가기준과 동일한 9등급으로 나눈 **0.14%로 급간을 조정**함으로써 만점자 비율을 줄이고 변별력을 키우고자 함

입찰건별 경제성 심사 만점자 현황

연번	입찰등급	입찰공고명	표본수	만점자수	만점자 비율 (%)	균형가격 비율* 표준편차
1	1등급(비)	사직단 부대시설 정비공사	29	7	24	0.0404
2	1등급(비)	서울 문묘와 성균관 향문 복원 등 정비공사	4	4	100	0.0033
3	1등급(비)	북한산성 대성문 해체,보수공사	10	5	50	0.0242
4	1등급(비)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공사(2단계)	22	8	36	0.0351
5	1등급(비)	한양도성 숙정문 해체보수공사	2	2	100	0.0035
6	1등급(비)	성주향교대성전및명륜당정비공사	14	9	64	0.0049
7	1등급(비)	창경궁 북동측 담장 보수공사	42	28	67	0.0055

4.2 개정안 검토

연번	입찰등급	입찰공고명	표본수	만점자수	만점자 비율 (%)	균형가격 비율* 표준편차
8	2등급	서울몽촌토성 보수정비 탐방로 철거공사	4	2	50	0.0111
9	2등급	부여나성 발굴지 정비사업	9	5	56	0.0083
10	2등급	2017년 제주 삼성혈 정비사업(담장보수)	6	3	50	0.0171
11	2등급	성읍민속마을 노후성곽 복원정비사업	3	1	33	0.0069
12	2등급	문경 조령관문(3관문) 보수공사	18	12	67	0.0036
13	2등급	금정산성 역사탐방로 조성공사	56	32	57	0.0124
14	2등급	영월 정양산성 북문지 보수정비	7	7	100	0.0033
15	1등급(비)	사직단 관리사무소 건립공사	28	19	68	0.0047
16	1등급(비)	현충사 경내 유적정비사업	25	15	60	0.0290
17	1등급(비)	송렬전 해체보수공사	10	8	80	0.0072
18	1등급(비)	함양 법인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극락보전 보수공사	9	8	89	0.0050
19	1등급(비)	파주 윤관장군묘 주변정비	7	5	71	0.0057
계			304	180	59	0.0122

* 표본수/만점자수는 합계, 비율 및 표준편차는 평균 값임

4.2 개정안 검토

- 다만, 현재 평가기준 등급은 한 단계 상·하향 될 때마다 1등급의 경우 1.25~1.75점, 2등급은 2.00~2.50점씩 감점되는 등 조밀해진 평가기준 급간에 비해 감점 폭이 너무 큼
 - 수리이행능력에 따른 낙찰자 선정이라는 제정목적에 고려하여 수리이행능력점수로 경제성 점수를 상쇄할 수 있도록 등급 간 감점 폭을 소폭 조정 (1등급은 1.00~1.25점, 2등급은 1.75~2.00점으로 감소)

현행					
심사 요소	배 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 수리계 확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 수리계 확심사 대상)	2등급
균형가 격에 의한 평가 (균형 가격이 예정가 격 대비 90% 미만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3.5% 이상	23.00	23.00	30.00
		B. 균형가격의 102.5% 이상 103.5% 미만	24.75	24.75	32.50
		C. 균형가격의 101.5% 이상 102.5% 미만	26.50	26.50	35.00
		D. 균형가격의 100.5%이상 101.5% 미만	28.25	28.25	37.50
		E. 균형가격의 99.5% 이상 100.5% 미만	30.00	30.00	40.00
		F.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5% 미만	28.75	28.75	38.00
		G. 균형가격의 97.5% 이상 98.5% 미만	27.50	27.50	36.00
		H.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26.25	26.25	34.00
		I. 균형가격의 96.5% 미만	25.00	25.00	32.00



개정안					
심사 요소	배 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 수리계 확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 수리계 확심사 대상)	2등급
균형가 격에 의한 평가 (균형 가격이 예정가 격 대비 90% 미만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0.49% 이상	25.00	25.00	32.00
		B. 균형가격의 100.35% 이상 100.49% 미만	26.25	26.25	34.00
		C. 균형가격의 100.21% 이상 100.35% 미만	27.50	27.50	36.00
		D. 균형가격의 100.07%이상 100.21% 미만	28.75	28.75	38.00
		E. 균형가격의 99.93% 이상 100.07% 미만	30.00	30.00	40.00
		F. 균형가격의 99.79% 이상 99.93% 미만	29.00	29.00	38.25
		G. 균형가격의 99.65% 이상 99.79% 미만	28.00	28.00	36.50
		H. 균형가격의 99.51% 이상 99.65% 미만	27.00	27.00	34.75
		I. 균형가격의 99.51% 미만	26.00	26.00	33.00

4.2 개정안 검토

■ 경제성 심사 평가기준 급간 조정에 따른 수리이행능력 점수 변화(1등급 입찰)

- 1등급 입찰 12건 중 경제성 점수가 평가기준 급간 및 평가점수 조정으로 변경된 경제성 평가 점수에 따라 종합점수 변동으로 인해 낙찰자가 바뀐 경우는 총 5건으로 나타남
- 그러나 낙찰자가 변경되면서 감소된 수리이행능력 평균 점수는 약 0.4점으로 이는 60점 만점의 0.6%에 해당하는 수치로 매우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음

연번	입찰공고명	점수 변동폭	점수 변동율(%)
1	사직단 부대시설 정비공사	△0.950	△1.2
2	서울 문묘와 성균관 향문 복원 등 정비공사	△0.300	△0.5
3	북한산성 대성문 해체보수공사	-	-
4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공사(2단계)	-	-
5	한양도성 숙정문 해체보수공사	-	-
6	성주향교대성전및명륜당정비공사	△0.529	△0.9
7	창경궁 북동측 담장 보수공사	-	-
8	사직단 관리사무소 건립공사	-	-
9	현충사 경내 유적정비사업	-	-
10	송렬전 해체보수공사	△0.045	△0.0
11	함양 법인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	-
12	파주 윤관장군묘 주변정비	△0.200	△0.3
1등급 계		△0.405	△0.6

4.2 개정안 검토

■ 경제성 심사 평가기준 급간 조정에 따른 수리이행능력 점수 변화(2등급 입찰)

- 2등급 입찰 7건 중 경제성 점수가 평가기준 급간 및 평가점수 조정으로 변경된 경제성 평가 점수에 따라 종합점수 변동으로 인해 낙찰자가 바뀐 경우는 총 4건으로 나타남
- 2등급의 경우 **감소된 수리이행능력 평균 점수는 약 0.8점**으로 만점 50점의 1.7%를 차지하는 등 1등급에 비해 다소 높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낮은 편임

연번	입찰공고명	점수 변동폭	점수 변동율(%)
1	서울몽촌토성 보수정비 탐방로 철거공사	-	-
2	부여나성 발굴지 정비사업	△2.450	△4.9
3	2017년 제주 삼성혈 정비사업(담장보수)	-	-
4	성읍민속마을 노후성곽 복원정비사업	-	-
5	문경 조령관문(3관문) 보수공사	△0.200	△0.4
6	금정산성 역사탐방로 조성공사	△0.050	△0.1
7	영월 정양산성 북문지 보수정비	△0.650	△1.3
2등급 계		△0.837	△1.7

4.2 개정안 검토

7. 문화재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 평가항목에 부합하는 계획서 작성을 위한 자료 제공

- 시설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기획재정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 6조 및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르면 현장설명 시 설계도면 등을 입찰자에게 교부하거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근거법제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시행 2016.12.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1호, 2016.12.30.]
제6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2. 물량산출근거, 시공계획서 작성방법(단, 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3. 설계도면, 물량내역서(단, 순수내역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4.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개정 2016.12.30.>
	5.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6. 세부심사기준
	7.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근거법제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시행 2016.2.1.] [조달청지침 제321호, 2016.2.1.]
제5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2. 설계도면 등 설계서
	3. 조사내역서(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금액 및 예정가격산정자료), 세부시행요령 등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4. 물량내역서(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포함)
	5.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 물량산출기준(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6. 시공계획서 작성방법(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7.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4.2 개정안 검토

7. 문화재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 평가항목에 부합하는 계획서 작성을 위한 자료 제공

- 시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 중 고난도 공사의 경우 대부분 물량내역수정이 필수적이므로 현장설명 시 설계도서를 포함한 상기 서류를 열람 및 교부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음
- 또한 현장설명이 생략되는 경우 내역입찰 등 상대적으로 단순입찰로 제시된 물량내역에 입찰자의 단가만을 제시하여 제출하면 되므로 설계도서 열람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나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의 경우** 내역입찰이 아닌 설계도서에 따라 물량을 산출 및 시공이 필요하므로 **현장설명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계약예규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열람 및 교부 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
 - 현재 발주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사전열람을 통해서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포함)를 확인할 순 있으나, 사전열람의 경우 직접 찾아가는 등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자료를 한정된 장소에서만 열람이 가능한 점(복사, 전자파일 전송 등 불가) 등 제약이 많음

현행

(신 설)

개정안

다. 계약담당자는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현장설명을 통해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 할 수 있다.

- 1) 설계도면 등 설계서(시방서, 예정공정표 등)
- 2)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공종별 내역서)
- 3) 물량산출근거(수량산출서)

감사합니다.

Q & A
